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연금저축은 국민의 노후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상품이며, 정부도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연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납입을 장려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대하여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여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금저축계좌에 대하여 일반 예금등채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한편,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사고보험금(만기보험금은 제외)은 일반 예금등채권에 비해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으므로 예금자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사고보험금에 대하여 일반 예금등채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예금등채권의 별도 보호한도 적용(안 제18조제1호 신설)

연금저축계좌에 대하여 일반 예금등채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나. 공제상품 사고보험금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안 제18조제2호 신설)
공제상품 사고보험금에 대하여 일반 예금등채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8. 00. ~ 9. 00.)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4) 법제처 심사 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한다”를 “한다. (이하 “보험금 지급한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예금등채권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밖의 예금등채권과 별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제18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연금저축 계좌(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1조 본문에 따른 연금저축을 포함한다)에 대한 예금등채권
2. 법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공제금(제1호의 예금등채권은 제외한다) 중 공제계약상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공제금(공제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공제금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예금등채권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보험금의 지급한도)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5천만원으로 <u>한다</u> . <u><후단 신설></u>	제18조(보험금의 지급한도) ----- ----- ----- <u>한다</u> . (이하 “보험금 지급한도”라 한다) 이 경우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예금등채권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밖의 예금등채권과 별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u><신설></u>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1조 본문에 따른 연금저축을 포함한다)에 대한 예금등채권
<u><신설></u>	2. 법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공제금(제1호의 예금등채권은 제외한다) 중 공제계약상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공제금(공제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공제금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예금등채권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429